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위	유통지유	<u> </u>				세목	자치	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인공수	분용꽃	가루생산단	지조성			예산 (백만원		145
사업목적	과수인공꽂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사업 주요내용	꽃가루 채추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 경쟁력 향성		렬에 따른 농 한 지원)	·어업인 등의	기 지원	실에 괸	난한 특별:	법 제5조(원	동어업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 가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등							
지원한도	725백만원((국비 3	62.5백만원	이내, 5ha/	l개소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융지	T	0	자부담	20
									: 백만원)
연도별	<u>구</u> 분 합 계	4	2018년 725	2019년 72	_	2	2020	2021년	
교도 글 재정투입	<u>합계</u> 국고		725 362.5	72 36:			290 145		2,179 ,089
계획	지방비		217.5	218			87	'	654
	자부담		145	14			58		436
담!	남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	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윤석중 044-201-2255)1-2255		
신청시기	정기(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격 및 요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

3. 지원대상

가. 지원내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전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항온항습기, 생물현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꽃가루 채취 및 검증, 제조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 준공 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시설설치 지원기준(예시)》

○ 기반시설 조성단가(1ha 기준)

苦	·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ŏ	} 계					76,428
	수목제거	굴삭기	일	8	400	3,200
	十号세기	기술인부	인	30	150	4,500
	정지작업	트랙터	일	3	150	450
	관수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식	1	9,000	9,000
기반시설	배수시설	400m	식	1	9,300	9,300
및	지주시설	Y자형	식	1	25,348	25,348
묘목식재	퇴비구입	20kg	포	2,000	3	6,000
312 1 1 1 1	퇴비살포	일반인부	인	12	70	840
	묘목구입	1년생	주	500	10	10,000
	재식비용	일반인부	인	12	70	840
	부 가 세	10%				6,950

* 꽃가루 생산량(1ha) : 50kg(본답 380ha 인공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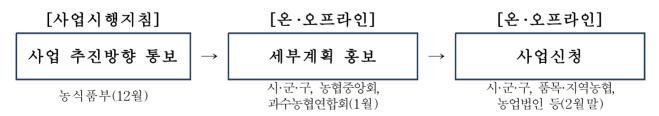
○ 시설·장비 기준단가(개소/5ha 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ŏ	} 계					342,670
	약채취기	L95×B50×H84	대	15	1,500	22,500
	약정선기	L60×B30×H30	대	15	1,000	15,000
	개 약 기	500ET	대	50	1,400	70,000
	화분정선기	L24×B34×H47	대	5	600	3,000
	전자저울		대	2	300	600
77 3 77	화분냉동고	L80×B70×H165	대	2	3,200	6,400
꽃가루	항온항습기	L75×B59×H40	대	1	2,200	2,200
채취 및	생물현미경		대	1	2,500	2,500
검증장비	부수장비	기 타	종	20	50	1,000
	컴 퓨 터		대	2	1,500	3,000
	테 이 블		조	2	300	600
	수 납 장		조	3	300	900
	기타집기		조	1	2,000	2,000
	부 가 세	10%				12,970
	소 계					142,670
관리 및	건 축 비	165 m²	3.3m²	50	4,000	200,000
검증시설	소 계					200,000

*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장비 기준단가는 예시이며, 설치규모, 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비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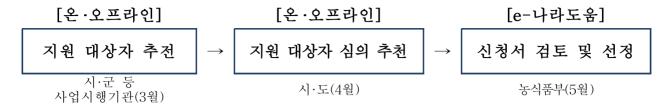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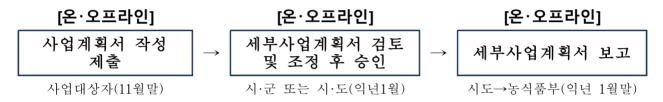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농업인 개인은 사업대상자 아님)
 - * '20년도 사업 신청은 '19.1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1월 중 적격자 선정 예정
- 시장·군수는 관내 농협·농업법인(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지확보 관련서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사업자)로 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4월말)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5월말)
 -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11월말)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꽃가루채취용 품종은 「과종별 권장 품종」등 우선 적용 : 붙임(참고자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입참방식>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업체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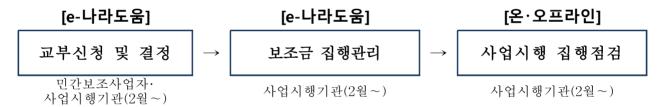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을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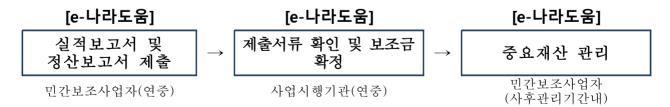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 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 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 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기본규정」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기본규정」제78조 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분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 3회 이상 사업 점검
 - 점검항목: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 하여야 함(농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생산· 공급실적)을 매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 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따라 사업 관리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 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 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 부터	리기간 까지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토지, 건물, 비	준공일	10년간	
닐하우스골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부동산의 종물(건물	준공일	7년간	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내 기계설비)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 성과지표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12)
 - 제출방법 : 첨부물 없이 신청서만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대상자('21.2) → 시장·군수('21.3) → 시·도지사('21.4)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격: '2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단체명 (법인명)				업 자 록번호		
신청자	대표자명			설	립년도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호	})	
	생산과종(품종)	"예시" 배꽃가-	루(장십랑)	조	성면적		ha
	단지조성지						
		계	국고		지빙	-비]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비	기반시설 •	묘목식재		꽃가-	루 채취	· 검증장비
	(백만원)						
		관리・김	험증시설			7]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

□ 현 황

0	사업지역(주소) :
0	조성면적 :
0	생산과종 및 품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_			
ગો મો	소 계				
기반 조성	00000				
7.8	00000				
	소 계				
장비	00000				
구입	00000				
	00000				
2) 2)	소 계				
관리 시설	00000				
71/20	00000				

□ 자부담금	확보계획					
0						
0						
□ 부지확보	계획(부지가	확보된	경우	관련	근거서류	첨부)
0						
0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00000				
00000				
00000				
00000				

※ " ←────"로 표시

2. 꽃가루 생산・공급계획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량
- 채취단지 확대여부

 \bigcirc

□ 공급계획

- 꽃가루를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 "예시": 사업자가 농협(품목·지역) 또는 작목반 등과 장기 공급MOU를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 꽃가루 품질보증 방안 등
- □ 채취단지 관리 및 운영계획
 - 채취단지 관리·운영계획
 - 운영전담자 배치계획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등

 \circ

0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사업신청 근거자료 제출 현황

담당자: (소속)

(성명)

(20)044-201-0000

- 1.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첨)
 - * 설립후 법인 운영실적 1년, 출자액 1억, 조합원 5인 이상
-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별첨)
- 3. 법인 통장사본 1부(별첨)
 - * 자부담 능력 확인용 통장 예금자명 표지, 잔고 페이지 2면
- 4. 부지확보 근거서류(별첨)
 - * 토지대장, 장기임대 계약서 등
- 5.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여부 확인

	신청자		사업참여 제한	n) —
시도(시군)	단체명 대표자 여부		비고	
	000영농조합법	000	'10년 00지원사업	'00년까지
	2]	000	보조금 부당수령	지원제한
	△△영농조합	444	해당없음	
	버이		OII O BX TO	

【참고자료】

□ 꽃가루 채취단지 과종별 권장 품종

○ 사과 : 후지(S₁S₂)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이 나 수분수용 꽃사과 품종이 가장 좋음

적합	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부적합품종
쓰가루, 홍금, 아리수, 그린볼, 갈라	홍로, 루비에스, 썸머킹, 피크닉	감홍, 알프스오토메, 여홍, 화랑, 후지조숙계(히로사키, 홍장군, 료카, 나리나), 후지 착색계(키쿠 8, 미시마, 미야마, 후부락스)

* 꽃사과용 품종 : 만추리안, 메이폴, 팅커벨, 데코벨, 골든벨, 로즈벨 등

 \bigcirc 배 : 신고(S_3S_9)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꽃가루 없는 품종
신수, 행수, 추황배, 금촌추, 만황, 만삼길	장십랑, 창조, 슈퍼골드, 풍수, 화산, 만수, 원황, 만풍	설원	한아름, 조이스킨, 황금배, 신화, 그린시스, 영산배